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 및 일자리와 관련한 과제를 보면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복지부)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금융위),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등의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52시간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총론은 맞지만 이를 실현할 각론이 마련되지 못했다.

개혁의 총체적 상이 부재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과 실행방도 없어, 세부 실현방안과 재원이 없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이에 따른 자영업자, 영세기업 반발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납품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재벌개혁 계획이 부재하다.

개혁의 동력을 형성하지 못해 보수언론에 고립, 국회에서 적폐세력들에게 고립,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개혁의 동력을 묶어 개혁동맹을 형성하고 이에 근거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녹녹치 않다.

노동주도 성장 정책을 위해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로 제시 재벌 특혜인 정부 지원금을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경제주체들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고용과 임금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면 임금상승/고용안전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 생산 증대의 선순환구조 성장을 완성 시켜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부터 매년 10월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로 지정하여 전 세계에서 공동행동을 개최해오고 있고, 민주노총은 2008년에 이어 2015년에도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좋은 일자리’ 지표 국제비교 평가 보고서 발간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용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정한 5개 범주 17개 지표에 관한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참고하여 K-SDGs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선정하는데 참고했으면 한다.

< 표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5개 범주 17개 지표

ILO Decent Work 11개 범주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5개 범주	17개 지표
고용안정성	고용기획 및 고용안정	경제활동참가율
고용기획		고용률(15세-64세) 실업률(15세-64세) 청년실업률(15세-24세) 임시직 비율
철폐되어야할 노동	-	-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노동조건	저임금노동자 비율
적절한 노동시간		연간노동시간
안전한 작업환경		10만명당 산재사망자수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성별 임금격차
고용 평등		고위직원/관리직 여성비율 (제외)
사회보장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공적사회복지 지출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중
사회적 대화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국제노동협약 비준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단협 적용률 교섭의 집중/조정
경제사회적 맥락	-	-

자료: 민주노총_2015년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 맞이 ‘좋은 일자리’ 지표 OECD 국제비교_2015년10월. p.2

◆ 의견 ◆

1. 먼저 제목부터 변경해야 할 것 같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표현을 ‘좋은 일자리’로 명기 했다.

SDGs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SDGs 8번(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2. ‘8-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 세부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로 변경하고, 지표를 ‘비농업부분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비율’에서 ‘고용률(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차지하는 비율)’과

‘임시직 비율(사전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규정된 일자리 비율)’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3. ‘8-5.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 세부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달성’으로 변경하고, 지표를 ‘비농업 부분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비율’과 ‘남녀별 평균임금과 실업률’에서 ‘저임금비중(중위임금 2/3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보조지표로 ‘임금불평등 지표(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비율 D9/D1)’, ‘임금노동자 주간 및 연간 노동시간(남녀대비, 상시직, 임시직, 일용직구분 적시)’, ‘성별 임금 격차(남성 중위임금에 대한 남녀 중위임금 격차의 비율)’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4. ‘8-b. 청년 고용을 위한 전략수립과 세계 고용협약이행’의 지표로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현황[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한 협약은 전체를 통틀어 29개로 32위(OECD 평균 74.7개), 이중 기본협약의 경우 8개 중 4개를 비준하여 33위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함]을 선정 검토해야 한다.

1 빈곤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I 목 표

1. 필요성 및 의의

※ 해당 목표 전반의 필요성과 의의를 개조식으로 제시

-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실현능력 확보와 사회계층간 통합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의 표준적인 삶의 기준보다 낮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빈곤선 이하 인구규모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모든 형태의 빈곤에는 물질적 빈곤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정신적인 빈곤 문제를 포함하는 혁신적 접근을 제안
- 소득보장 뿐 아니라 각종 사회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을 확대하여 사회보장의 실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소득 빈곤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요건인 주거, 교육, 건강 등 각종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모든 계층, 집단 및 지역에 증대하여, 서비스 이용가능성의 보편성을 확보
- 수원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의 강화
- 원조수혜국으로 경험을 반추하여 든든한 원조지원국의 역할 수행
- 수원국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
- 수원국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어 행복도가 높은 사례를 찾아 홍보할 필요성 있음.

2. UN 및 주요국 사례

※ 목표설정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이행을 주도하는 UN의 주요 활동과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관련 분야 사례를 제시

3. 우리나라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 UN-SDGs에서 제시하는 극빈층(1일 \$1.25 미만자)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어, 극빈층 근절의 목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등장,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상대빈곤의 해소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
 - 아동의 상대 빈곤위험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위험도는 높아지고 있음
 - 심각한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계층의 빈곤도를 감안하여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상대 빈곤 위험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관점을 기대함.
- 낮아진 사회이동성 및 빈곤의 고착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취약계층을 장애인, 어린이, 여성, 노인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왔는데 행복도지수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표 1>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상대 빈곤위험도의 변화

인구집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대적 빈곤위험도	0-17	74.1	73.6	68.4	66.7	63.1	63.8	62.3
	18-25	62.2	62.2	77.6	83.0	65.8	69.1	65.8
	26-40	60.8	54.7	50.0	54.2	53.0	46.7	47.9
	41-50	65.0	68.9	69.1	62.7	63.1	58.6	52.1
	51-65	125.2	116.2	119.1	114.4	122.8	113.8	108.9
	65-75	295.8	291.9	288.2	297.4	301.3	300.0	313.0
빈곤율		0.143	0.148	0.152	0.153	0.149	0.152	0.146

주: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전체 집단 빈곤율 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2016)."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database). (2016.12.21. 인출); 강신욱 외 (2016: 93) 재인용.

4. 목표 설정

※ 해당 목표를 문장 형태로 제시(몇 개의 안을 제시)

1안)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충분성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2안) 지난 70년간 산업화와 경제적 물질적 성장발전을 기록한 한국의 경우 정신적 안정과 행복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봄.

II 세부목표 구성

1. 세부목표

※ 세부목표를 10개 이내로 제시하고, 한 문장 정도의 설명을 붙임

※ 이를 위한 수단이 되는 세부목표는 1.a, 1.b 형태로 번호를 붙여서 작성

예) 1.a 최저생계수단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보

1.b 생물다양성보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1-1.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노인의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필요성) 한국은 지난 경제성장의 결과로 극심한 절대빈곤을 탈피하였으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부 계층은 경제 성장과 사회안전망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받지 못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모든 계층에서 모든 측면에서 빈곤율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함.
- (목표와의 부합성)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전체 계층으로 확산되어 전 국민을 빈곤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함. 경제성장이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저항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의 충원을 이루지 못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게 됨.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체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고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필요성)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여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목표와의 부합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사회적 안정과 인적자본의 확충이 필요. 개인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에 잘 부합됨.

1-3.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필요성) 취약계층은 경제적 빈곤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차원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되므로,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자격 및 우선적인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역량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계발의 기회 등 개인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함.
- (목표와의 부합성)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자립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는 것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1-4.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 (필요성)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불평등한 충격을 받게 되며, 다른 집단에 비해서 회복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재기할 경제적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동력 또한 약하기 때문임. 따라서 당면한 위험 노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경험한 위험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와의 부합성) 취약계층의 위험 경험의 과급력은 일반계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1.a. 한국의 중점협력국에게 **모든(?)** 측면의 빈곤 종식을 위한 자원을 **보장(?)**한다.

- (필요성) 정책환경과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국가별 협력전략이 이미 구축된 한국의 중점협력국에게 개발협력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목표와의 부합성)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에 협조할 수 있음

1.b. 아시아 개도국 빈곤층에게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인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시아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견고한 정책들을 설계한다.

- (필요성) 빈곤층에게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정책개발 필요에 있어서, 사회적 소외계층과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과 태도,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한국과 문화적 동질성이 큰 아시아 국가 맞춤형 개발전략을 우선적으로 모색한다.
- (목표와의 부합성)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에 협조할 수 있음

한국의 남방정책에 따라서 아시아개도국 빈곤층을 선택과 우선적인 집중 지원 대상국으로 함은 타당함.

2.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의 포괄성 검토

- ※ 제시된 세부목표(target)가 해당 목표(goal) 달성을 위해 모든 분야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지 검토하여 제시

- 빈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소득보장은 현재 빈곤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의미
 - 서비스보장은 소득보장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를 보충한다는 의미이며, 기회의 보장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III 세부목표별 현안 진단과 방향 제시

※ 세부목표별로 2-3페이지 정도 개조식으로 작성

1. (1-1)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노인의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1) 현안 진단

- 한국의 빈곤상황은 인구학적으로 볼 때, 아동빈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노인빈곤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
한국 노인빈곤층의 분포를 양질의 일자리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층 빈곤문제와 균형잡힌 관점으로 파악할해야 할 것임.
-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계층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지는 근로빈곤의 문제에 취약한 상황임.
- 한국의 경우 아동빈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그 이유는 한국의 가구들이 아동빈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한 가구가 부양해야 할 아동의 수를 줄이는 저출산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아동빈곤율의 감소보다는 출산율의 제고와 아동빈곤율의 유지가 주요 목표가 적절할 것임.

2) 추진 방향

-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의 증액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소득지원이 필요.
 - 한국은 노인빈곤율 또한 높으므로 소득지원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빈곤 노인의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해 보건 의료, 돌봄 등 노인대상 서비스의 확대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불안정 노동자들의 근로빈곤 문제에 대응
 - 한국 불안정 청년노동자의 근로빈곤문제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4 1/3 1/2 2/3 3/4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근로자들의 유휴 시간은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미래형 직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청년 미취업자들에 대한 생활보장
 - 한국 청년 미취업자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시급함.
 - 한국의 대학진학률, 외국인 근로자수, 기피업종과 직무 및 한국 청년창업 저해요인을 분석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

2. (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 현안 진단

-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부족. 국민연금의 미성숙과 한계. 기초연금의 낮은 급여수준 문제.
 - 한국 노인 사회보장체계는 노인층 증가율을 감안하면 복지재정 악화전망과 대응방안 도출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건강보장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과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공적 건강보장의 범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음.
 - 한국 노인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중장기전망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강함.
 - 한국 노인성질환의 발생 요인이 본질을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나쁜 생활

습관으로 보고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봄.

- 실업자에 대한 보장기간과 보장수준이 낮음.
- 특히 청년 미취업자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 미취업자들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화사회 모델을 벗어나서 4차산업혁명 시대 고용 모델 제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봄.

2) 추진 방향

- 공적 사회지출의 확대
- 한국 산업화시대 이후 저성장시대와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마스터플랜 도출과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강화
- 기초연금의 확충
- 한국 산업화시대 이후를 대비하여 비제조업 특히 문화예술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정책 수립이 긴급하다고 봄.
- 건강보험의 비급여 축소와 본인부담금 축소를 통한 공적 건강보장의 범위 확대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수준 제고
-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3. (1-3)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4. (1-4)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1) 현안 진단

-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되는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것으로 합의
 - WHO는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
-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부담임.
 - 우리는 1994년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경험한 바 있고, 2016년의 폭염은 그 뒤를 잇는 무더위 사태
 - ※ 기상청에 따르면, 1994년과 2016년의 폭염일수는 29.7일과 22.4일을 기록했고,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
 -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 현상이 발생한 2016년 한 해에만 온열질환자 2,125명, 사망자 17명이 발생하여 온열질환 감시체계 작동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
 -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건강분야에서만 2011년 기준으로 약 8천9백억 원에서, 2030년에는 27조6천억 원~35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2) 추진 방향

- 조직의 변화 필요
 - 보건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업무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조직 구성
 - ※ 영국의 보건 부문 적응 정책은 Public Health England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조직 내에 정부 정책의 근거로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권고하는 부서(Chemical & Environmental Effects Dept) 마련
 - 완화 정책이나 타 분야와의 co-benefit을 창출할 수 있는 중앙부처 간 공식적인 소통 체계 필요
- 보건 분야에서 대응해야 하는 근거와 수요에 기반 한 중점 영역 발굴
 - 정책적 시급성, 중요성, 시행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원

※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등)에 따라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기 위한 계획 수립 중

• 적응 대책 수립 절차의 체계화

-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강영향은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취약,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 필요

※ WHO에서는 질병 감시체계의 대상을 5년마다 재설정할 것을 제안

※ 미국은 CDC가 기후변화 관련 주요 건강 문제를 발표했으나, 지속적으로 여러 연방정부와 전문가가 참여(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보고서 발간

※ 영국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정책 수립, 정책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련된 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뿐 아니라 앞선 결과를 다음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는 체계

IV 목표간 연계

1. 목표간 연계 방안

1) 보건(3번)에서의 보건, 환경성 질병과 연계

- 빈곤 퇴치의 목표가 빈곤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빈곤으로부터 파급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건 및 환경성 질병 분야에서 제시될 수 있음

2) 성 평등(5번)에서의 여성 고용과 연계

- 저임금의 고착화에 따른 근로빈곤 해소를 위해 가구내 여성고용을 강조하

고 있어, 여성고용의 문제는 여성의 자기개발 외에도 가구단위 빈곤감소의 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2. 타 목표에서 다룰 세부목표 또는 과제

※ 당해 목표나 세부목표에서 다루기 어려우나 타 목표나 세부목표에서 반드시 다루야 할 과제를 제시

1) #3건강 웰빙과 관련

- 한국인들의 식생활습관을 분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한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적극 대비하여야 함.
- 한국의 흡연, 음주문화와 및 육식 위주 지나치게 높은 단백질 위주 식생활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산업화 이전 전통 농경사회 음식문화인 집밥과 사찰음식 위주의 채식에 기반 음식문화생활(적게 먹기운동 등)을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있음.

2) #4 양질 교육 관련

- 대학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국가적으로 평생 공부하는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계속 심화되는 한국 출산율 저하와 노인층 증가로 한국 교육부문 구조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임.
-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진학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을 반드시 회복하여야 할 것임.

3) #8 양질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

- 한국은 지난 65년 간의 북한과의 휴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통일시대를 열고자 노력 중임.
- 한국은 남북평화통일을 실현할 경우 다시 경제적으로 고성장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임.
-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남북 통일시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3) #17 지구촌 협력, 파트너십

- 한국 청년세대들이 동남아와 중앙아 기타 전세계 개발 도상 국가들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살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음.
- 이들이 취업이나 현지 창업 또는 세계시민으로 이주한 노마드(Nomad, 유목민) 세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봄.
- 다가오는 시대는 이기적 소유경제사회가 아닌 이타적 공유경제사회로 진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역량을 지구촌 협력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봄.

V 지표 작성// 개별 꼭지별로 작성

1. 상대빈곤율

○ 상대빈곤율(전체,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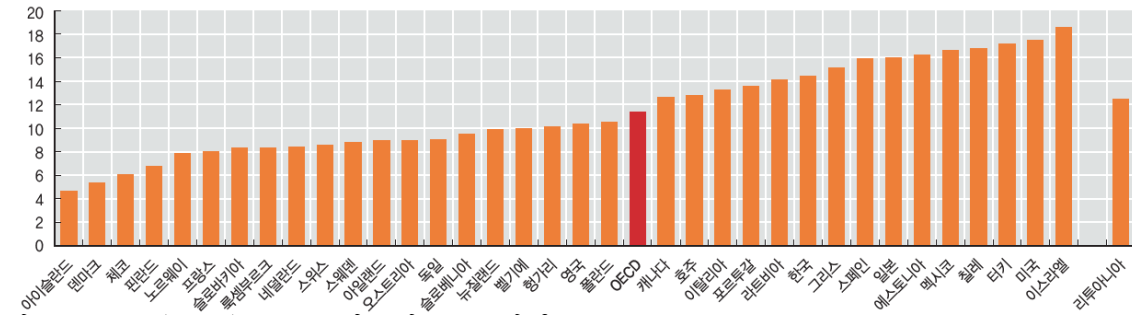
<표> 한국의 빈곤율 추이

(단위: %)

소득(지출) 범주 연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2006	16.1	13.4	7.7
2007	16.7	14.1	8.1
2008	16.7	14.2	7.9
2009	17.3	14.1	9.0
2010	17.0	13.8	8.4
2011	17.0	13.8	8.6
2012	16.3	13.7	7.9
2013	16.7	13.4	8.3
2014	16.7	13.3	9.4
2015	17.3	12.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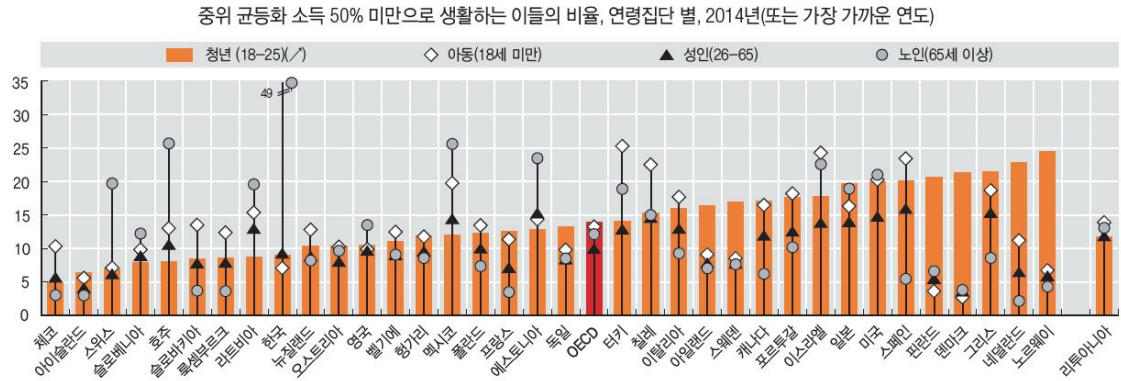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05.25).

<그림> OECD국가들의 상대빈곤율(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 가구에 사는 비율)



자료: OECD(2016). 2016 한눈에 보는 사회. p.111.

<그림 > OECD국가들의 연령집단별 빈곤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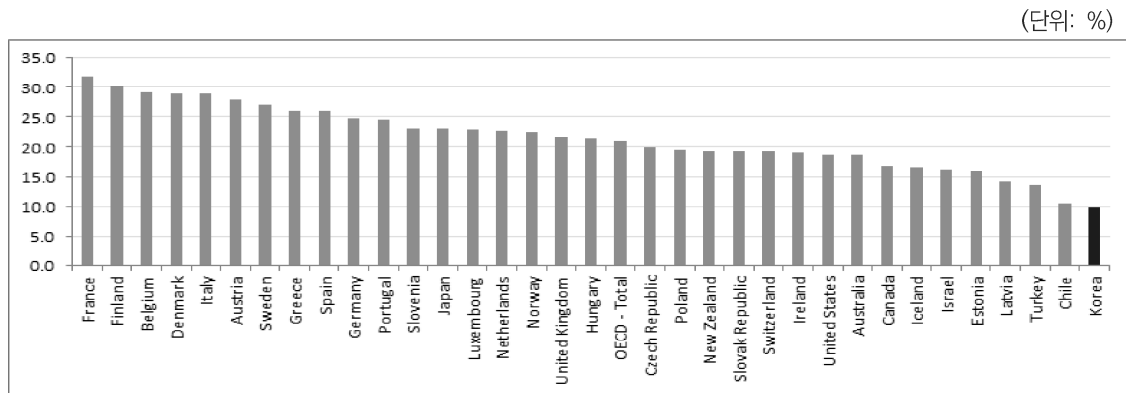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idd>).
 자료: OECD(2016). 2016 한눈에 보는 사회. p.111.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

<그림> OECD 국가들의 공적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



주: 일본은 2013년의 수치임.

자료: OECD 홈페이지.

○ 노령 및 유족 급여에 대한 공적지출의 GDP 대비 비중

<표 > OECD국가들의 노령 및 유족 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Public expenditure on cash benefits for old-age and survivors									Total Inc. non-cash (% of GDP)
	Level (% of GDP)					Change (%)	Level (%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Level in net terms (% of GDP)	
	1990	2000	2005	2010	2013		2000	2013		
Australia	3.1	4.7	3.7	3.8	4.3	-8.5	12.9	11.7	4.3	5.2
Austria	11.3	12.0	12.0	13.1	13.4	11.7	23.8	26.2	11.4	14.0
Belgium	8.9	8.7	8.8	9.7	10.2	17.5	17.7	18.3	10.2	10.5
Canada	4.2	4.2	4.0	4.3	4.6	9.1	10.3	11.1	4.3	4.6
Chile		5.0	3.7	3.4	3.0	-40.6			2.9	3.0
Czech Republic	5.6	6.9	6.7	8.1	8.7	26.0	17.1	20.4	8.7	8.9
Denmark	6.1	6.3	6.5	7.2	8.0	26.3	12.0	14.1	5.8	10.1
Estonia		6.0	5.3	7.6	6.4	6.9	16.5	16.8	6.3	6.5
Finland	7.2	7.4	8.1	9.8	11.1	49.7	15.5	19.3	9.2	12.3
France	10.4	11.4	12.0	13.2	13.8	21.1	22.4	24.3	12.6	14.3
Germany	9.5	10.8	11.1	10.6	10.1	-6.5	24.2	22.7	9.7	10.1
Greece	9.5	10.4	11.4	13.3	17.4	67.6	22.3	31.5	16.2	17.5
Hungary		7.5	8.4	9.6	10.3	38.0	15.8	20.8	10.3	10.8
Iceland	2.2	2.1	1.9	1.6	2.0	-3.1	5.1	4.6	2.0	2.5
Ireland	4.8	2.9	3.2	4.9	4.9	68.8	9.5	12.5	4.5	5.4
Israel		4.6	4.8	4.8	4.9	6.5	9.6	11.9	4.9	5.5
Italy	11.3	13.5	13.6	15.3	16.3	20.9	29.6	31.9	14.0	16.4
Japan	4.8	7.3	8.5	10.0	10.2	40.5	18.9	24.2	9.7	12.1
Korea	0.7	1.3	1.4	2.0	2.6	99.3	5.3	8.2	2.6	2.7
Latvia	0.0	8.7	5.5	9.3	7.5	-13.7	23.2	20.3	7.2	7.7
Luxembourg	7.7	7.1	7.9	8.1	8.5	20.1	19.5	19.7	7.5	8.5
Mexico	0.4	0.8	1.2	1.8	2.3	175.4		8.9	2.3	0.2
Netherlands	6.3	4.7	4.7	5.0	5.4	16.1	11.2	11.7	4.9	6.4
New Zealand	7.2	4.9	4.2	4.6	5.1	4.0	14.3	14.3	4.4	5.1
Norway	5.5	4.7	4.8	5.2	5.8	23.6	11.2	13.2	4.7	7.9
Poland	5.0	10.5	11.3	11.1	10.3	-1.6	24.9	24.2	9.3	10.4
Portugal	4.8	7.8	10.0	12.0	14.0	78.4	18.3	27.9	13.0	14.0
Slovak Republic		6.3	6.1	6.8	7.2	15.0	12.0	17.5	7.2	7.5
Slovenia		10.3	9.7	11.0	11.8	14.3	22.4	19.6	11.8	12.0
Spain	7.7	8.4	7.9	9.8	11.4	35.6	21.5	25.3	10.9	12.0
Sweden	7.3	6.9	7.2	7.3	7.7	11.8	12.8	14.7	6.0	10.0
Switzerland	5.2	6.0	6.2	6.1	6.4	5.9	17.6	18.7	5.2	6.6
Turkey	2.4	4.9	6.0	7.7	8.1	66.4			8.1	8.3
United Kingdom	4.5	5.1	5.3	6.1	6.1	20.9	13.3	13.8	5.9	6.6
United States	5.8	5.6	5.7	6.6	7.0	24.6	16.7	18.4	6.5	7.0
OECD	5.8	6.7	6.8	7.7	8.2	21.8	16.5	18.1	7.6	8.6

Note: See Adema, W. and M. Ludai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92,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for more details on the data, sources and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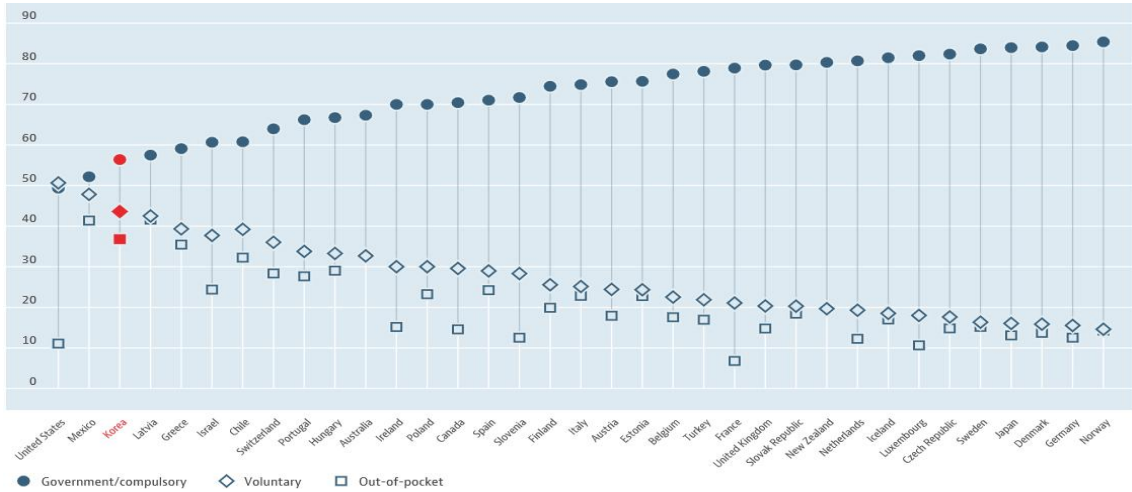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자료: 2017 Pensions at a Glance. p. 143. 원출처: OECD SOCX data.

○ 보건의료비지출 중 공적의료비 지출의 비중

- 한국의 공적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56.4%로 낮고, 민간지출이 43.6% 높고 특히 본인부담이 36.8%로 높음.

<그림 > OECD국가들의 보건의료비지출 부담의 구성(공적/민간/본인부담)



4. 기초연금 및 최저연금의 급여수준

<표 > 기초연금 및 최저연금의 급여수준

	Relative benefit value (% of AW earnings)			Absolute value (units of national currency per year)			Recipients, 2016 (% of over 65s receiving)		
	Basic	Minimum	Social assistance	Basic	Minimum	Social assistance	Safety-net	Minimum	
Australia	27.6	x	x	22 677	x	x	76	x	
Austria	x	x	27.8	x	x	12 359	10	x	
Belgium	x	30.1	27.1	x	14 025	12 631	7	31	
Canada	13.5	x	19.2	8 879	x	9 833	33	x	
Chile	14.0	x	x	1 122 516	x	x	60	x	
Czech Republic	9.9	11.7	12.4	29 290	38 520	40 920	-	-	
Denmark	17.6	x	18.6	72 756	x	76 788	81	x	
Estonia	14.7	x	14.7	2 009	x	2 000	6	x	
Ireland	17.4	x	21.0	7 612	x	9 292	40.6	x	
France	x	21.7	25.3	x	8 256	9 610	4	49	
Germany	x	x	20.1	x	x	9 588	3.1	x	
Greece	23.0	x	x	4 608	x	x	19	x	
Hungary	x	10.3	8.3	x	342 000	273 600	0.39	0.61	
Iceland	5.7	x	17.9	478 344	x	1 509 516	-	x	
Ireland	34.1	x	32.4	12 132	x	11 544	17	x	
Israel	12.9	x	23.5	18 368	x	33 426	25	x	
Italy	x	21.3	19.0	x	6 525	5 825	5	32	
Japan	15.3	x	19.0	780 100	x	970 380	3	x	
Korea	x	x	5.5	x	x	2 400 000	67	x	
Latvia	x	x	7.6	x	x	783	-	-	
Luxembourg	9.8	36.7	26.8	5 496	20 652	16 176	1	29	
Mexico	x	29.4	6.2	x	33 180	6 960	60	x	
Netherlands	26.3	x	x	13 352	x	x	x	x	
New Zealand	40.0	x	x	23 050	x	x	x	x	
Norway	32.5	x	x	183 480	x	x	18	x	
Poland	x	22.2	15.2	x	10 591	7 248	12	-	
Portugal	x	30.4	17.6	x	5 328	3 079	2	38	
Slovak Republic	x	40.7	19.8	x	4 446	2 166	1	7	
Slovenia	x	13.2	17.4	x	2 418	3 183	17	2	
Spain	x	33.3	19.3	x	8 905	5 151	6	25	
Sweden	22.3	x	x	94 359	x	x	x	35	x
Switzerland	x	16.5	22.6	x	14 100	19 290	12	-	
Turkey	x	41.2	7.1	x	15 181	2 607	22	-	
United Kingdom	22.2	x	x	6 122	x	x	14	x	
United States	x	x	16.7	x	x	8 796	4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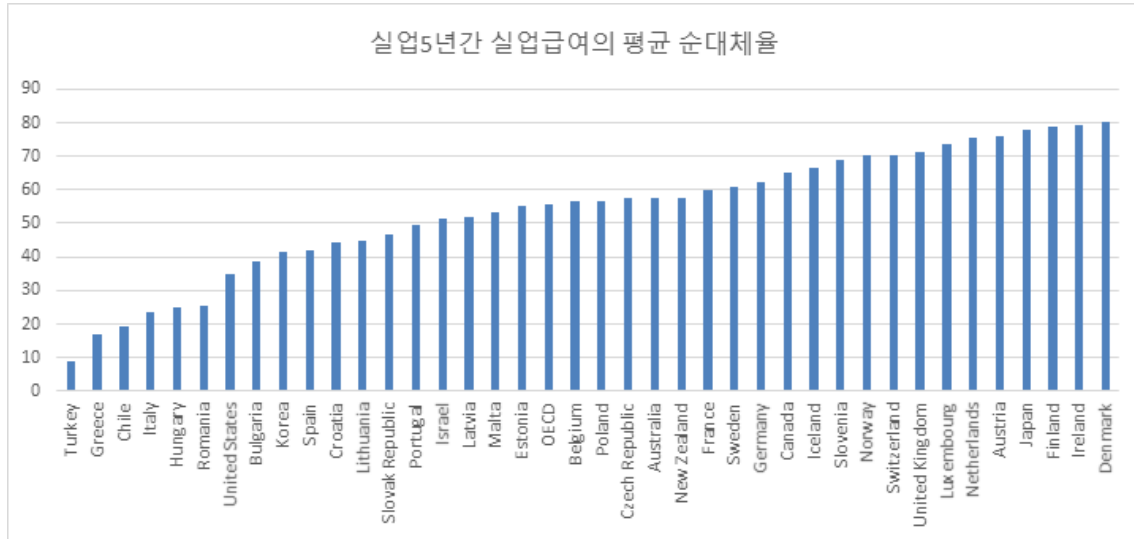
Note: - = Data are not available. x = Not applicable. Recipients' data is 2012 for Estonia, France (Safety-net), Greece, Ireland, Israel, Italy, Korea, Luxembourg, Poland, Slovenia and Turkey.

자료: OECD(2017). 2017 Pensions at a Glance. p. 89.

5. 실업급여 순대체율

- 실업 5년간의 평균 실업급여의 이전 순소득의 순대체율
- 1인 소득자(Average Wage) 부부 + 두자녀(6세, 4세)
- 주거급여 및 사회부조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그림 > OECD국가들의 실업 5년간 실업급여의 평균 순대체율



6. 하절기 온열질환자수

1) 정의

- 하절기(5~9월) 온열질환(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부종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수
- 단위: 명

2) 목적 또는 의의

- 온열질환은 고온에 노출되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후변화 중 기온의 증가로 인한 건강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온열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과 기절질환자, 야외노동자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인구집단에서의 발생위험이 높음.

3) 산정방법 및 출처

-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여, 온열질환 감시체계 전산시스템으로 신고된 환자수
- 출처: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

4) 최근 5년간 추세

-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된 온열질환자수도 증가해 왔으며, 극심한 폭염이 발생했던 2016년 온열질환자수는 2,21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폭염일수(일)	15.0	18.5	7.4	10.1	22.4
온열질환자수(명)	984	1,189	556	1,056	2,125

5) 비교지표

- 비교지표 없음

6) 시사점

- 폭염일수의 변화와 폭염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폭염의 노출 정도와 개인의 취약성에 따라 건강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별, 취약 및 민감계층별 건강위험을 평가하여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7. 자연재해별 사망 및 상해

1)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으로 인한 사망, 실종, 부상자수, 이재민수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자연재해로 추

가될 예정

- 단위: 명

2) 목적 또는 의의

-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심각해질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 인프라 및 환경 이외에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지역별 자연재해 현황과 피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연재해의 위험 지역과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적응대책 지원을 강화함.

3) 산정방법 및 출처

- 자연재해별, 기간별, 지역별(시도별) 사망자수, 실종자수, 부상자수, 이재민수
-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4) 최근 5년간 추세

- 자연재해별, 시기별, 지역별 집계가 방대하므로, 연도별 추세는 추후 재작성

연도	2016.01. 17.~201 6.01.25 대설	2016.05. 02.~201 6.05.05. 호우			
	이재민수(명)	7	35		
사망(명)	0	1			
실종(명)	0	0			
부상(명)	0	1			

5) 비교지표

- 비교지표 없음

6) 시사점

1. 중점협력국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지출, 공공보건·공공부조 지출 비율

1) 정의

- 각국 GDP 대비 공공사회보장지출(public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공보보건지출(public health care), 공공부조지출(social assistance) 비율
- 단위: %

2) 목적 또는 의의

- 정부의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분야 지출과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지출은 정부가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보건과 생계의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하는 자원이므로 전체 경제규모(GDP) 대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배분 비율은 저개발국의 빈곤 종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
- 전체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직접적인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사회적 보호 및 사회안전망에 할당되는 자원 규모를 가늠하는 보조적 지표로 분야별 지출보다 장기적인 추이 파악이 용이함.

3) 산정방법 및 출처

- 공공사회보장지출, 보건·공공부조 프로그램 총예산 ÷ GDP
- 출처: ILO Social Protection Report 2014-15 Social security expenditure 또는 ADB, EC, IMF, OECD, UN ECLAC, WHO 등 국별 원출처 활용

2. 중점협력국 하루 수입 1.25달러 미만, 1.9달러 미만 빈곤층 비율

3. 중점협력국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